

관심만큼 정보보안, 방심만큼 정보유출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18년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 통보 요청

1. 관련근거

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작업환경측정)

나.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4(작업환경측정 횟수)

2. 화학적, 물리적 유해인자로부터 직원 건강을 보호하고,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정기한 내에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측정주관 : 본부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나. 대상 : 본부별 사업장(협력업체 수급인의 작업장소 포함실시)

다. 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5에 의거 지정기관

라. 방법 :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후 시행

마. 행정사항

○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: 관할 지방노동청, 보건환경처 통보 등

※ 노출기준 초과 작업공정에 대한 개선증명 또는 개선계획 등 제출

○ 작업환경측정 결과 게시 : 전사포털 업무마당>안전관리>작업환경측정

붙임 2018년 작업환경측정 계획 1부. 끝.

보 건 환 경 처 장 환

수신자 고객안전처장, 차량계획처장, 승무시스템처장, 기술계획처장, 총무처장

부장 정재황

팀장 최영도

처장 전결 03/22
조진환

협조자

시행 보건환경처-1938 (2018.03.22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507 전송 02-6311-4290 / ave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